환자 중심, 국가가 동행하는 치매안심 기본사회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2026~2030)

2026. 2.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Ⅰ. 수립 배경 및 경과

1 수립 배경

○ **(연혁)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치매 관리**를 위한 제1차 "치매관리 종합대책('08.9월)" 수립 이후, **「치매관리법」 제정**('11.8월)·**시행**('12.2월)

- **동법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5년 단위로 제2·3·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발표**('13~'25)

○ **(현황)** 제1~4차 종합계획 및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계획('17.9)에 따라 **치매 인프라 확충** 및 **의료·돌봄 지원 등 경제적 부담 경감**에 초점

< 각 종합계획별 주요성과 >

구분	주요성과	구분	주요성과
1차 ('08-'12)	• (예방) 지자체 치매 조기검진 의무화 • (치료) **치매치료 바우처(약제비)** 지원 • (환경) 치매극복의 날,, 걷기대회 개최 • (인프라) **국가치매등록관리DB** 구축	**3차 ('16-'20)**	• (치료) **치매정밀검진검사도구 급여**화 • (치료) **치매전문병동 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 • (돌봄) 단기방문요양서비스 도입 • (환경) **치매공공후견제 도입**
2차 ('13-'15)	• (돌봄) **장기요양 5등급** 신설 • (돌봄) **치매가족휴가제** 도입 • (인프라) **치매상담콜센터** 운영 • (인프라) 중앙-광역치매센터 등 전달체계 확립	**4차 ('21-'25)**	• (예방)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 개발 • (치료)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 (돌봄) **선임요양보호사 대상 치매교육과정** 신설 • (인프라)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시행

※ **치매국가책임제('17.9)** : **치매안심센터 설치**(256개소), **중증치매 의료비 본인부담률 10%**로 **하향**,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설**, 치매극복연구개발(R&D) 추진

☞ 초고령사회 진입 등 **정책환경 변화**와 **수요 다변화**에 따라, 향후 5년을 준비하는 **치매 관리 정책의 새로운 비전 제시** 필요

☞ 치매안심센터 **전국 설치** 등 **인프라 완비**, 치매안심병원 등 **양적 확충**에 이어 치매환자 및 보호자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국가치매 관리사업의 질적 변화** 요구

Ⅱ. 대내·외 정책환경

1. 초고령사회 진입과 치매 환자 수 증가

○ **(환자 증가) 인구 고령화**로 65세 이상 **치매환자** 및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수 증가 추세 지속**될 전망

* 추정치매환자 수 : 97만 명(`25년) → 121만 명(`30년) → 226만 명(`50년)

** 추정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수: 298만 명(`25년) → 368만 명(`30년) → 569만 명(`50년)

※ `23년 치매역학·실태조사

- **'23년 치매역학·실태조사 결과**, '16년 조사 결과 대비 **치매 추정유병률은 0.25%p** 감소했으나(9.5%→9.25%),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추정유병률은 6.17%p** 증가(22.25%→28.42%)하여 **예방관리 필요성 증대**

< 추정 치매환자 증가 전망 (중앙치매센터,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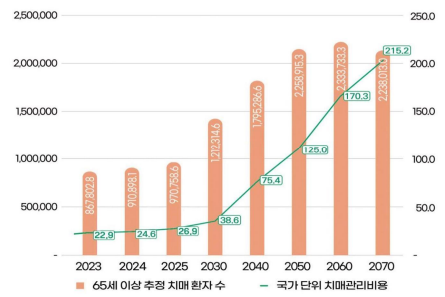

< 추정경도인지장애진단자 추이 (`23년 치매역학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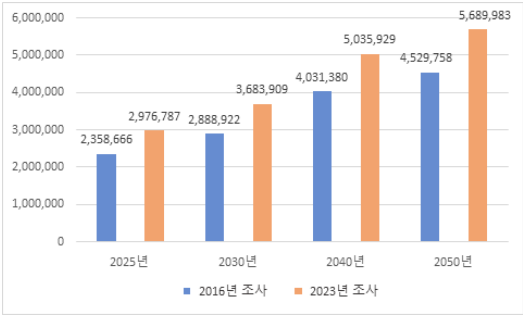

2. 치매 관리 비용 증가 및 돌봄 부담 급증

○ **(비용 지출)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지역사회 환자(1,733만원)보다 시설·병원 환자(3,138만원)의 **부담**이 **1.8배** 높아 **지역사회 거주가 더 경제적**

< 치매환자 연간 치매 관리비용 (`23) >

구분		지역사회 거주 환자	시설·병원 입소 환자
총 치매 관리 비용		**1,733.9만 원**	**3,138.2만 원**
	보건의료비[1)]	438.2만 원	1,489.1만 원
	돌봄비[2)]	1,162.2만 원	1,533.1만 원
	간접비[3)]	133.5만 원	116.0만 원

* 1) 보건의료비 : 병원 입원비, 병원 진료비, 약제비 2) 돌봄비 : 장기 요양비, 간병비, 병원 이용 교통비, 보조용품 구입비 3) 간접비 : 환자 시간비용, 보호자 시간비용, 환자 생산성 손실 비용

※ `23년 치매역학·실태조사

- ‘23년 총 **국가치매관리비용**(22.9조원)은 GDP(2,408조원) 대비 **0.95%**에 달해, **지속 가능성** 고려 시 **치매 예방 및 재가거주 지원 확대** 필요

※ 출처: 2024 대한민국 치매현황(중앙치매센터)

○ **(돌봄 부담)** 배회, 망상 등 **행동심리증상(BPSD)을 동반**하여 **장시간 돌봄을 요구**해 **보호자**의 **부담**으로 **소진, 근로 단절** 발생 우려

* 지역사회 치매 환자 가족의 45.8% 돌봄 부담, 40%가 삶의 질 악화, 정신적 건강 악화가 가장 높음(`23년 치매역학실태조사)

3. 치매 고령층의 특성 변화와 맞춤 돌봄 필요 증가

○ **(고령층의 변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따라 **노년층**의 재가 거주 수요 증가*, 건강행태 개선** 등 **지역사회 거주 지원 요구 증가**

* 희망거주 형태: (건강 유지 시) 현재 집에서 계속 산다 87.2%, (건강 악화 시) 48.9%

** 건강수준 향상 : (과음주율) `17년 10.6% → `23년 7.8%, (흡연율) `17년 10.2% → `23년 9.4%, (우울증) `17년 21.1% → `23년 11.3% ※ 출처: `17년 및 `23년 노인실태조사

- 이에,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연계 제공하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26.3월 시행 예정), **치매환자**도 **개인 맞춤형 지원** 및 **재가 거주 지원 필요**

○ **(환자 특성)** **치매노인은 독거 가구 비중이 높고** 일반 노인 대비 **우울수준, 저작능력** 등이 **저하**되어 타 질환 관리에 취약해 **복합적 질환 관리 요구**

구분		1인 가구	만성질환	우울 수준	저작능력 (불편정도)
전체 노인		32.8%	2.2개	3.1점	31.5%
치매환자	지역사회	**52.6%***	**5.1개**	**5.8점**	**60.4%**
	시설·병원		**4.2개**	**7.1점**	**70.9%**

* 치매유병률과 독거비율이 높아지는 연령에 비례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

※ 출처: (전체 노인) 2023년 노인실태조사; (치매환자) 2023년 치매역학실태조사

○ **(재산관리 위험)**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23년 기준 154조원 규모이며, ‘50년에는 **3배 이상 급증**할 전망(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5.5)

- **치매 등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인해 사기 등 경제적 피해에 노출되므로 **자산관리**방안 마련이 **시급**

참고 해외 사례

미국	○ **(통합지원) 치매환자 통합지원**을 위한 **GUIDE모델(Guiding an Improved Dementia Experience)을 시범 도입**(`24.7~)하고 8년 시행 후 **확대 결정 예정** * 메디케어(Medicare)를 통해 사례관리사, 임시간호 등을 제공 ○ **(재승인법) NAPA(국가 알츠하이머 프로젝트법, National Alzheimer's Project Act)를 재승인하여**(`24.10) 법적 효력이 `35년까지 연장 * (주요내용) '치료'에서 '위험요인 감소 및 뇌 건강'으로 전환하고,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포함해 인지저하 위험 감소 및 인지건강 증진 관련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 의무화
영국	○ **(통합관리) 치매**를 **6대 주요 질환***으로 **포함**해 **주요 질환 전략(Major Conditions Strategy)을 발표**(`23)하여 지원 강화 * 6대 질환: 암,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정신 질환, **치매**, 만성 호흡기 질환 ** (주요내용) 건강관리, 위험요인 관리, 진단, 통합돌봄, 생애말기 등으로 질환 통합관리 목적 ○ **(치매연구) 「데임 바바라 윈저 치매 미션」(Dame Barbara Windsor Dementia Mission)을 발표**(`22)하여 치매 관련 **연구 지원 확대**
독일	○ **(치매전략)** 치매관리전략*을 수립하여 **`20.9월에 발표, `26년까지 추진** 중 * 장기요양보험제도 내 산재된 치매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기본 토대가 됨 ○ **(네트워크) 재가거주 지원**을 위해 전국 **치매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동네 상점, 문화시설 등 지역자원 대상 '**치매친구 프로그램' 확대**
일본	○ **(공생사회) 인지증기본법**(`24.1, 시행)에 근거해 **인지증시책 추진 기본계획**(2025~2029)이 **발표**되어 **인지증공생사회 실현**을 목표로 정책 수립 ○ **(배리어프리)**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공공기관에 매뉴얼** 배포, **사회참여 기회** 제공
기타	○ **(당사자 권리)**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는 치매환자 **재산권 보장 및 안정적 노후 보장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를 도입** * 싱가포르는 **비영리기관**을 통해 치매환자 대상 **신탁계약에 기반한 재산관리지출을 지원** ○ **(기술 발전)** 각 국에서 진단기술, 디지털 헬스케어, 신약 개발 등 치매 관련 **신기술의 활발한 연구** 진행

Ⅲ. 지난 5년간의 계획 평가

1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개요

○ **(비전·목표)**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치매안심사회 실현

○ **(추진체계)** 2대 분야 8대 전략 16대 추진과제로 로드맵 마련

비전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치매안심사회 실현**
목표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 60%('21년) → 80%('25년)

수요자 관점 생애주기별 치매 관리 강화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	**1. 선제적 치매 예방 · 관리**	1) 치매고위험군 집중관리 및 치매 조기발견 지원 2) 인지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2. 치매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 투입	1) 치매환자의 치료·관리 전문성 강화 2) 초기 집중 관리로 치매 악화 지연
	3. 치매돌봄의 지역사회 관리 역량 강화	1) 지역거주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다양화 2) 유관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
	4.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1) 지역기반 치매환자 가족 지원 서비스 강화 2)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역량 강화 지원

치매 관련 인프라의 연계체계 마련, 제도개선을 통한 기반 구축

치매 관련 정책 기반 강화	**1. 치매관리 전달체계 효율화**	1) 치매관리 주요 수행기관의 기능 정립 및 강화 2) 유관기관 연계와 협력을 통한 치매 전달체계 개선
	2. 치매관리 공급인프라 확대 및 전문화	1) 치매 의료·요양기관의 서비스 전문화 2) 의료·요양 제공기관 확충 및 지원체계 개선
	3.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치매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확대	1) 치매 관련 통계와 연구 지원 체계 마련 2) 치료와 돌봄을 지원하는 과학기술(Technology) 활용
	4. 치매환자도 함께 살기 좋은 환경 조성	1)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2) 치매환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적 환경 조성

2 제4차 계획 주요 성과 및 한계

1 주요 성과

1. (예방·치료) 독거 등 고위험군 조기검진 시행 및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등

○ **(조기 발견) 치매선별검사도구(CIST) 개발** 및 75세 이상 독거노인,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치매 고위험군** 대상 **검진·예방 관리 시행***

* 치매안심센터 등록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재검률 초과달성 '21년 목표 29.0%/ 실적 29.2% → '24년 목표 30.4%/ 실적 32.2%

○ **(인지강화지원)** 경로당·복지관에서 **인지활동서비스 제공**('21~), **경도인지장애자 지원을 규정**한 「치매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24)

○ **(의료) 치매임상진료지침 개정**(대한치매학회 '21), **재가거주 치매환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도입('24)

2. (돌봄경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례관리 제공 및 요양보호사 치매교육 확대 등

○ **(자원 연계)** 치매안심센터의 **독거, 부부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 대상 **선정기준 체계화, 심층사례회의** 등 **맞춤형 사례관리 확대·개편**

* '23년 18개 센터 대상 시범운영 → '24년 전국 256개 센터 확대·적용

○ **(가족 지원)**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확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24년 401개소), **선임요양보호사 치매교육**과정 **실시**('23)

* 단기보호(연 9일→11일) 및 종일방문요양(연 18회→22회)까지 단계적 확대

○ **(돌봄 인프라)**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확대***,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 시범 운영**('24, 128개소)

* 단기보호 제공 시범사업 1차('19.9.~12.), 2차('20.5.~'21.4.), 3차('21.5~12.), / '22.1.~(연장) 운영

3. (친화환경) 조기발굴 등을 위한 정보연계 강화 및 치매안심마을 지정기준 마련 등

○ **(인식 개선) 치매파트너**('24. 184만명), **치매파트너 플러스**('24. 24만명), **치매안심가맹점**('24. 11,195개소) **확산**을 통한 지역주민 치매인식 제고

- 치매안심마을 **단계적 확산** 및 **지정·우수기준 마련**

* (치매안심마을 추이) (`21) 641개소 → ('22) 710개소 → ('24) 878개소

○ **(일상생활 지원)**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24. 1,459명) 및 **치매 공공후견 심판청구 지원**(~'24. 680건)

4. (연구·기술)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치매역학·실태조사 발표

○ **(기술 지원)** 전주기적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20~) 추진

*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논문의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 84.7점('24 기준),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특허 출원 등록 수 35건(`24 당해년도)

○ **(현황 조사)** 치매 **인식도 조사 도구 개발** 및 **격년 조사 실시***('21~), **치매역학·실태 조사** 결과 발표(`25), **해외치매정책동향** 발간('22, '24)

* 전국 치매인식도 점수 ('21) 77.8점 → ('23) 78점 → ('25) 79.5점

5. (정책기반) 접근성 확대를 위한 분소 확대 및 안심센터 운영평가 시행 등

○ **(관리체계)** 접근성 제고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분소** 확대(273개소, '24), 광역치매센터 주관 **지역사회 자원 기초자료 조사**('21~)

○ **(기관 연계)** 국가건강검진사업('22~), 방문건강관리사업('23~), 행정안전부('24~) 등 **타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인지저하자 조기발굴 강화**

○ **(운영평가)**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시행**('23~), **치매관리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 시행***('25~)

*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 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치매관리법 개정(`23.3)

2 한계

1. (예방·치료) 비효율적 조기진단체계 및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대상 서비스 부족

○ **(진단도구)** **조기진단**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의 진단검사** 시 장시간 소요로 인한 경도인지장애 **변별력 저하** 등 **비효율성 발생**

○ **(경도인지장애)** **치매위험인자별** 관리방안 **부재**,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대상 인지강화교실 외 건강관리, 신체운동 등 **지원 다각화 요구**

2. (돌봄경감) 정서지원서비스 부족, BPSD 대응역량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 발생

○ **(정서 지원)** 치매환자의 정서지원 및 보호자의 **돌봄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상담, 교류 공간 등 **정서적 지원체계 부족**

○ **(돌봄역량)** **행동심리증상**(BPSD) 관련 **교육 부족** 등으로 인해 섬망 등 BPSD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진의 **대응 역량 제약**

3. (친화환경) 치매 사각지대 및 권익 보호 미흡

○ **(사각지대)** 치매환자의 **운전능력 평가방안 부재**, 신원 미확인 치매환자를 인계·보호할 방안 필요 등 지역사회 **치매 사각지대 발생**

○ **(권익보장)**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가 사기 등의 **경제적 피해**에 **노출**, **치매공공후견 지원 제한**에 따른 **지원 규모 한계**

4. (연구·기술) 혁신기술을 반영한 치매신기술 지원 및 활용 필요

○ **(신기술)** AI 발전에 따라 **치매 관련 혁신 기술 지원이 부족**하고, 현장에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비**

5. (정책기반) 인프라별 지역 특화, 고도화 필요

○ **(전달체계)** 전국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었으나 **도시·농어촌**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 미흡**, 치매환자 증가에 대응하여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등 치매센터의 **기능 강화 요구**

Ⅳ. 추진전략 및 방향

1 비전과 전략

비전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목표

- 치매 **예방**부터 **돌봄**까지 全단계에서
- 환자가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국가가 동행**하겠습니다.
- **지역 현장**에 맞는 기반이 형성되도록

대표 지표

- **(총괄)** 지역사회 치매관리율 ('25) 76.4% → ('30) 84.4%

*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률,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록률, 치매환자 및 보호자 이용률 등 가중치 합

- **(권리보장)**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26) 시범 → ('28) 본사업 도입
- **(인프라)** 치매관리주치의 ('26) 90개 시군구 → ('28) 전국 확대

주요 과제

①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조기예방·치료체계 강화

1. 경도인지장애 조기진단 강화 및 치매위험인자 관리
2. 전문치료체계 구축과 치매복합질환 대응

②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 돌봄과 맞춤 지원 내실화

1. 치매 걱정 없는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다양화
2. 보호자의 돌봄소진 예방 및 종사자 BPSD 등 치매역량 강화

③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

1. 치매여도 안전한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2. 자기결정권 및 자산관리 등 치매환자 권리 보장

④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 지원 확대

1. AI 등 치매 연구 및 디지털 기술 활용 지원
2. 데이터 기반 치매정책 평가

⑤ "모두가 협력하는" 정책 기반 고도화

1.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치매관리체계 고도화
2. 촘촘한 치매자원 연결망 형성

2 추진방향

□ 초고령사회 진입, **AI기술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포괄적·맞춤형 정책 추진**

○ **(개인·가족 측면)** ▲치매 예방·조기진단부터 치료까지 **일상 지원 강화,** ▲**가족 부담**을 **완화**하는 **맞춤형 돌봄 인프라·서비스 제공**

○ **(사회·환경·기술 측면)**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치매 친화형 환경 조성**, ▲**혁신 기술**을 반영한 **연구 개발·활용** 지원, ▲의료, 복지 등 **사회자원 연계 강화**를 통한 **치매안심 기본사회** 실현

< 제5차(`26~`30) 치매관리종합계획 기본방향 >

분야	세부과제	As-is		To-be
예방 치료	치매조기 진단체계	진단검사 시 장시간 소요 등으로 이용 불편	⇨	자체 진단검사도구 개발로 편의성 제고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지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대상 서비스 부족		위험인자별 관리방안 보급 및 프로그램 다양화
돌봄 지원	보호자 부담 경감	보호자의 돌봄 부담으로 인한 우울 호소	⇨	치매안심센터의 정서지원 등을 운영해 돌봄 지원
	종사자의 치매 역량	섬망, 등 행동심리증상 대응에 어려움		직종별 BPSD 교육과정 확대로 치매역량 제고
친화 환경	운전면허	인지관련 운전능력 평가도구 미비	⇨	고위험군 대상 운전능력 진단도구 개발
	치매재산관리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인한 사기 등 경제적 학대에 노출		치매안심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도입
연구 기술	연구 지원	AI 등 외부 기술 발전 고려 부족	⇨	AI,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 연구 지원
	치매프로그램	개발된 치매프로그램 증가하나 관리 미비		근거 기반의 프로그램 관리체계 구축
정책 기반	관리체계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지원	⇨	치매안심센터 유형별 맞춤 지원
	자원연계	환자-보호자 간 거주지가 다를 경우 서비스 이용 불편		거주지 제한 없는 광역연결망 구축으로 원활한 서비스 환경 조정

Ⅴ. 주요 추진과제

1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조기예방·치료체계 강화

1. 경도인지장애 조기진단 강화 및 치매위험인자 관리

◇ **한국형 자체진단도구 개발**을 통해 **효율적인 조기진단체계 구축**

◇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치매위험인자**를 적극 **관리**하여 **치매예방** 강화

□ **(조기 발견)** 독거 등 치매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조기진단체계 개선 및 협력체계 강화**

❶ 치매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후기 고령기**(85세 이상) **진입 前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검진체계*** **개편**

* (현행) (1단계) **선별검사**(CIST) → (2단계) **진단검사**(CERAD-K, SNSB) 및 협력의사 → (3단계) 협약병원에 의뢰하여 치매 원인 등 **감별검사** 수행

- 현행 **진단검사**는 **장기간**(1~2시간) **소요, 진단검진** 필요시 **대기가 발생**하여 **경도인지장애 조기발견 제약**
- **장시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 진단검사** 도구(CIST-In Depth) 개발 등 **치매검사도구 개선**('26~'27 개발 '28 확산)
-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액 상향**(現 11만원)**을 추진**하여 치매 검사 비용**부담 완화 검토**('29)

* (검사비용) 원인을 확인하는 감별검사의 경우 본인부담금 5만원(CT)~33만원(MRI) 소요

	현행		개선
진단검사	▸치매안심센터 내 CERAD-K, SNSB 시행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 의뢰 가능) * 저작권료 연간 2억원 소요 (저작권료 5.7천원 x 진단인원 연 4만명) ** 1인당 1~2시간 소요되어 장시간 대기	⇨	▸의료기관용 진단검사도구(CERAD-K 등)를 **치매안심센터에 적합**하도록 **자체진단도구 개발** * (기대효과) 시간 절약으로 이용 편의 증대, 비용 절감 기대
연계체계	▸노인유관사업 간 연계 부족		▸노인맞춤돌봄, 노인일자리, 통합돌봄 등 **연계체계 강화**로 **조기발견체계 개선**

❷ 66세 이상 고령자 대상 **건강검진 시 시행**하는 **인지건강검사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26~'27)해 **조기발견율 제고**

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치매안심센터 간 연계·협력**을 통해, 취약 노인이 **치매 등 의심**되는 경우 **치매검진 실시 및 조기 발굴**

*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가 '주관적기억감퇴 설문(SMCQ)'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인지기능을 확인·모니터링하고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전문기관인 치매안심센터로 연계

❹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과 연계**하여 독거노인 등 **고립가구의 조기 발견 발굴 체계 구축** 및 **인적 안전망*** 활용 확대

* 이웃연결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❺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대상 치매선별검진 시 **인센티브를 부여**('26)하여 **조기검진 활성화**

* 치매선별검사(CIST) 수검 완료자에 대해 활동시간(3시간)을 인정하여 참여 유인

❻ 의료·돌봄 필요도 조사 결과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가 **치매 등 의심**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로 연계**('26)

* 예) 노인 통합판정서에 '인지기능저하', '정신행동증상', '문제행동증상', '의사소통기능저하' 등이 있는 대상자

□ **(경도인지장애 지원)** 치매로의 진행 위험이 높은 **경도인지장애**부터 **인지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심센터**의 서비스 제공, 연계협력 제고 등 **예방기능 강화**

* (현황) 경도인지장애진단자의 치매안심센터 등록률은 5.1%, 재검률은 `24년 32.2%이나, 인지강화교실 등 서비스 이용률은 5.1%에 불과(`24 기준)하여 맞춤 서비스 확대 필요

❼ 경도인지장애진단자의 맞춤상담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치매안심센터**의 **경도인지장애 다각적 지원체계 마련**

- 대상자가 **상황, 증상 등을 고려**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 위험인자* **자가관리방안, 연계서비스** 안내, 모니터링 등 **관리 기반 마련**('27~)

* 치매위험인자로서 **시력저하, 고지혈증,** 낮은 교육수준, 난청, 외상성 뇌손상, **고혈압, 알콜과다, 비만, 흡연, 우울증, 사회적고립, 운동부족,** 당뇨, 대기오염 등 14개 제시(란셋위원회 보고서, `24)

-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인지강화교실을 대폭 확충**하고(주 1회→주 3회), 신체활동 등 **프로그램도 다양화**('29)

❽ **맞춤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로 치유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심리·정서적** 지원 및 **사회성 회복**을 도모**문체부**

*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경도인지장애진단자와 치매위험자(65세 이상) 대상으로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미술·음악 등 예술치유활동 지원(문화체육관광부)

※ (수혜자 수) (`26) 900명 → (`28) 1,050명 → (`30) 1,200명

❾ **'건강100세운동교실'을 확대**하고 **인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층**일 경우 **치매예방**을 위해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 추진

※ (운동교실 3회 참여인원) (`26) 64,000명 → (`28) 74,000명 → (`30) 82,000명

❿ **경로당·복지관**에서 **시행**되는 인지강화프로그램 등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치매안심센터와 협력** 안내

* (경로당) 치매예방프로그램(보건소·건강보험공단이 연계한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스마트경로당(비대면 영상 치매예방교실)을 통해 전국 경로당회원 참여유도 및 확대

** (노인복지관) 치매발병 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진단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에 대한 인지활동서비스 제공 활성화

*** (추진계획) 인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쇠군 대상 예방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개발·보급

【참고】 경도인지장애와 치매위험인자

○ **(경도인지장애)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등의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로 진단되지 않는 상태**

-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균형 유지, 보행 안정성 저하**로 **낙상 위험률 증가**(Racey et al, 2021), **우울감 유발**(Joosten-Weyn Banningh et. al, 2008l) 등 특성이 나타남
- 매년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약 **10~15%가 치매로 진전**되는 반면, 정상군은 약 1~2% 수준에 불과(Petersen et al., 2001)
- 국내·외 연구 결과, 조기 개입과 관리를 통해 약 **30% 수준에서 정상**으로 **회복**(엄수진·하주영, 2021, Salemme S. et al., 2025)

○ **(치매위험인자) 란셋 위원회(Lancet Commission)**는 **치매위험인자를 관리**할 경우 **지역사회 치매 발병의 약 45%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24)

- 청장년기(45세 이전): 저학력(5%)
- 중년기: 청력 손실(7%), 고콜레스테롤증(7%), 우울(3%), 외상성 뇌손상(3%), 신체활동 부족(2%), 당뇨병(2%), 흡연(2%), 고혈압(2%), 비만(1%), 과도한 음주(1%)
- 노년기: 사회적 고립(5%), 대기오염(3%), 치료되지 않은 시력 상실(2%)

2. 전문치료체계 구축과 치매복합질환 대응

◇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재택의료센터의 치매교육 확충 등으로 **치매치료체계 확립**

◇ 치매 원인별·중증도별 **맞춤 진료지침** 개발 및 **복합질환** 관리

□ **(일차 의료)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재택의료센터 질적 제고** 등을 통한 **일차의료 중심 치매관리 체계 확립**

❶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통합적 치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치매관리주치의 단계적 확대 추진**

※ (기대효과) 치매관리주치의의 체계적 치료·관리 하에 충분한 상담, 교육, 비대면 관리 등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치매환자의 양질의 서비스 수혜 기대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도입**('24) 이후 진행된 사업 **효과성 등을 점검**하여 **전국 확대**('28)

- **치매관리주치의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 강화** 추진('26)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치매관리주치의 시스템을 탑재,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활성화

※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치매관리주치의와 정합성 있는 **관계 재설정 모색**

예) 치매환자를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집중관리군' 포함 방안 및 집중관리군內 치매환자 치료 시 필요한 치매 교육 포함 등 검토

- 치매관리주치의 **전문성 제고** 및 **질 관리**를 위한 **보수교육**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28~)

* (現) 주치의 지정 시 치매전문교육 필수 이수 → (改) 연차에 따른 보수교육 도입 (예: 매3년)

【 참고 : 치매관리주치의 사업 프로세스 】

환자상태 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포괄평가, 연 1회)			주치의 서비스 제공	
치매 관련 평가	·치매중증도·약물복용, BPSD유무 ·돌봄, 장기요양등급, 영양상태	> 맞춤 관리 계획	대면 서비스	교육·상담(연 8회 이내) -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질병 이해, 관리 방법 등
일반 건강 평가	·관리하는 만성질환 유무, 건강행태, 예방접종여부 등		비대면 서비스	환자관리(월 1회, 연 12회 이내) - 전화 또는 영상전화를 통해 환자 상태 모니터링 및 관리
			재택 서비스	방문진료(연 4회 이내) - 거동불편 등으로 내원이 어려운 환자에게 방문진료

⇓

지역사회 내 치매 서비스 연계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보험 등)

❷ **방문진료 인프라**로서 **재택의료센터 질적 제고** 및 **연계 강화**

* 장기요양수급자의 60%는 치매환자로, 재택의료센터 대상자의 다수가 치매환자이나 치매교육 미이수 등으로 재택의료센터 의료진이 대상자 관련 치매 진료 제약

- **재택의료센터** 교육프로그램 내 **치매교육***을 **포함**하고, 복지서비스 등 필요시 **치매안심센터 연계**('26)

* **심화 치매교육** 희망 시 중앙치매센터 주관 **치매전문교육 수강을 안내**하고, **교육 이수** 시 **치매관리주치의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음을 유도

□ **(지역 인프라) 치매안심병원** 등 지역사회 **의료인프라 확대**

❸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인 치매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 지속 확충 추진**('25, 25개소)

- 기존의 공립요양병원 중심 **치매안심병원 지정** 관련 **개선안** 및 민간병원(급성기 병원 포함) 참여 **활성화 방안 추가 검토**

❹ **치매환자를 포함**하는 **독거노인** 대상 **IoT 기반 응급모니터링 및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시 119와 연계**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 응급상황 대응이 어려운 노인 대상 ICT기기를 통해 응급상황 대처 및 건강·정서 지원 등 **실시간·비대면 24시간 돌봄** 제공

< 댁내 장비 설치 구성도 >

□ **(맞춤 지침) 적절한 치매 치료·관리가** 될 수 있도록 **원인별·중증도별 맞춤형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❺ 주요 치매 **원인별, 중증도별 임상진료지침** 개발('27~'28) 및 **전국 확산·적용**

* 치매전문학회 의뢰를 통해 마련된 지침을 바탕으로 병·의원에 보급·확산

【 참고 : 가이드라인 개편(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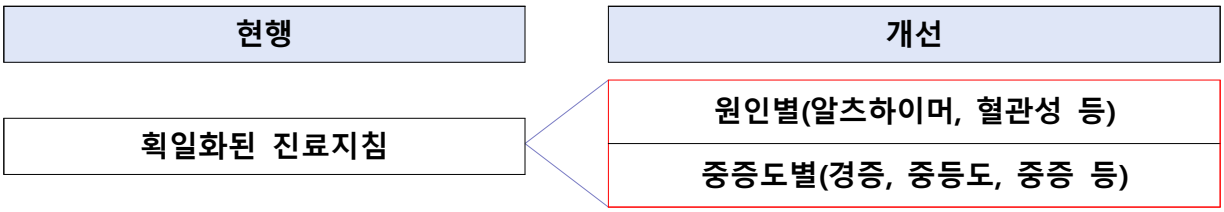

- 여러 직종의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

□ **(복합 질환)** 저작능력 저하, 섬망 등 **치매환자의 복합질환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

❻ 저작능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로 구강관리가 어려운 치매환자가 **적절한 구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구강관리 기반 마련**('26~)

- **치과단체·학회와 협의**하여 **치매환자 구강진료·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건소 방문구강관리 종사자 대상 **치매교육** 등 추진

❼ **치매환자의 섬망** 등으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치매전문 협력기관 및 의뢰체계** 모색('28)

* 예) 섬망 등으로 인한 긴급 의료상황 발생 시
치매관리주치의(병원급) 대면/비대면 진료 의뢰 → 의료기관 의뢰·회송
정신응급의료기관 통한 응급입원 → 치매안심(전문)병원 연계 등의 방안 검토

2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 돌봄과 맞춤 지원 강화

1. 치매 걱정 없는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다양화

◇ **인지지원등급 중복 이용 허용,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 등 치매돌봄서비스를 **내실화**

◇ 치매안심센터 경증 **치매환자 지원 확대**, **조기발병** 치매환자 **제공체계** 확립 등 **돌봄 서비스도 다양화**

□ **(맞춤 시설) 치매환자 돌봄지원 서비스 내실화**

❶ **치매**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돌봄 지원 강화**

* (문제점 치매환자쉼터는 주 2회 3시간, 인지지원등급자 주야간보호 이용 한도는 월 12일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 대한 중복 이용 제한 등으로 돌봄 부담

- **치매**를 지닌 **장기요양 수급자**의 **주야간보호 이용 확대**를 위해 **재가 월 한도액 상향 검토**('27~)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쉼터**와 **장기요양 주야간보호시설 간 중복 이용**을 **허용**하여 **돌봄 경감 추진**('26)

❷ **미확충 지역 중심**으로 예산 지원 및 **인지친화적 시설 환경**을 조성하여 **'치매전담형' 공립요양기관 확대**

- 국공립기관·병원이 부족한 지역 중심 **치매전담형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 확충 지원*** 및 인지스티커 등 **시설 내 치매 친화 환경**** **조성**('27~)

* 미확충 지역(53개 시·군·구) 중심 확충 지원 및 시설 내부 치매환자가 이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중앙치매센터 등과 협력하여 표식, 조명 등 시설 내부 치매친화 가이드라인 개발·배포

	현행		개선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 국공립**기관·병원 부족(現 53개 시·군·구)** ▸ 인지 친화적 환경 조성 미비로 치매환자의 **시설 이용 불편**	⇨	▸ **미설치 지역**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시설 신축 지원 ▸ 인지스티커 등 **인지친화적 시설환경 조성**

□ **(경증환자 집중케어) 치매안심센터의 경증 치매환자 지원 확대**

❸ **「초기 치매환자 집중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대상자를 확대**하고 **집중관리 후 모니터링 실시방안** 마련

* (개요) 12주 집중관리서비스: 1주차(등록·상담) → 2주차(서비스 계획 수립) → 3~10주차(서비스 제공) → 11~12주차(종결)

- **경증 치매환자가** 진단 시기와 관계없이 **초기 집중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기준*** **개선**('26)**, 추적관찰** 실시

* (문제점) 초기 집중관리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음에도, 기존에는 치매진단 1년 이후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이용을 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❹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치매안심센터 **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29)

* (필요성) 치매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치매환자쉼터는 일반적으로 주 2회, 3시간 운영하여 운영시간 확대 등을 요구

** (추진방향) 쉼터 확대(이용횟수, 공간 등), 대도시, 농촌 등 치매안심센터 유형에 맞게 전문적이고 특성에 맞는 쉼터 제공 방안 등 쉼터 운영 개선 연구 등 추진

□ **(조기발병 치매) 조기발병**(65세 미만) **치매환자 서비스 제공체계 확립**

❺ **조기발병(초로기) 치매환자** 및 **보호자** 대상 정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

- 조기발병 치매환자 대상 운영 중인 전문 프로그램 운영 외 **맞춤 상담 매뉴얼** 등 **서비스 다양화** 추가 모색('27~)

* 조기발병 치매환자는 노인성 치매환자와의 가족구성 등 특성이 달라 이를 고려한 지원 필요

❻ **경제적 부담**이 높은 **조기발병 치매환자** 대상 치매안심센터 內 **업무 수행** 등 **사회활동모델 마련 검토**

- 지자체 초록기억카페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 가이드라인** 확산, 운영 중인 **사회활동 모델 확산방안** 모색('27~)

2. 보호자의 돌봄 소진 예방 및 종사자 BPSD 등 치매역량 강화

◇ **치매환자 정서 지원** 및 **보호자**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해 보호자 **돌봄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안전한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BPSD대응 교육과정 개발,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치매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

□ **(부담 경감) 치매환자 가족**이 **돌봄 부담**으로 겪는 **우울감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심적 스트레스 완화 지원** 및 **교류환경 조성**

* `23년 치매역학실태조사 지역사회 치매환자 가족 대상 조사: (삶의 질 변화여부) 악화 40%, (가장 부정적으로 변화된 영역) **정신건강 50%,** (돌봄 과정에서 어려움) **경제적 부담 38.3%**, 정책적 지원 부족 31.9%, **치매 지식 부족 25.5%**

❶ 치매안심센터의 **정서 지원 패키지** 운영, **그룹상담서비스** 제공 등 치매환자 보호자 대상 **가족교실, 자조모임을 다양화***('26~)

* (現) 가족교실, 자조모임은 정보제공 위주로 운영되어 서비스 다양성 부족
→ (改) 상담, 정서지원, 멘토링 등 다양한 모임 형태로 운영 다양화

❷ **돌봄 경험이 풍부**한 **보호자**가 **초기돌봄 보호자** 대상 **노하우를 전수**하는 **'기억친구 멘토-멘티'**(가칭) **노인일자리 제공**('26 시범운영, '27 제공)

- **수요자 간담회** 결과, **돌봄 장기화**로 돌봄**역량은 높으나 직장 유지가 곤란**해 보호자의 축적된 **돌봄 경험을 활용할 지원책** 마련 필요성 제기

⇨ **치매환자 보호자**가 **여유 시간**에 다른 보호자를 **지원**하는 **'기억친구 멘토-멘티'(가칭) 노인일자리 모델** 신규 개발·도입

	현행		개선
보호자	▸돌봄 부담으로 인한 우울감 호소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치매 정보 부족 ※ `23년 치매역학실태조사 지역사회 보호자 대상	⇨	▸치매안심센터의 **정서지원 패키지** 운영 ▸돌봄 교류환경을 제공하는 **치매환자 가족**의 **노인일자리 제공**

❸ **(치매 교육)** BPSD관리 및 대응, 인지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교육**을 **개발·실시**하고, **치매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체계** 고도화

* BPSD(행동심리증상, Behavioral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기억력 저하 등 인지기능 저하 외에 치매로 인해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정신행동증상**을 **통칭**
예) 망상(피해 망상 등), 환각(환시, 환청 등), 공격성, 배회, 부적절한 행동 등

【 치매교육체계 고도화(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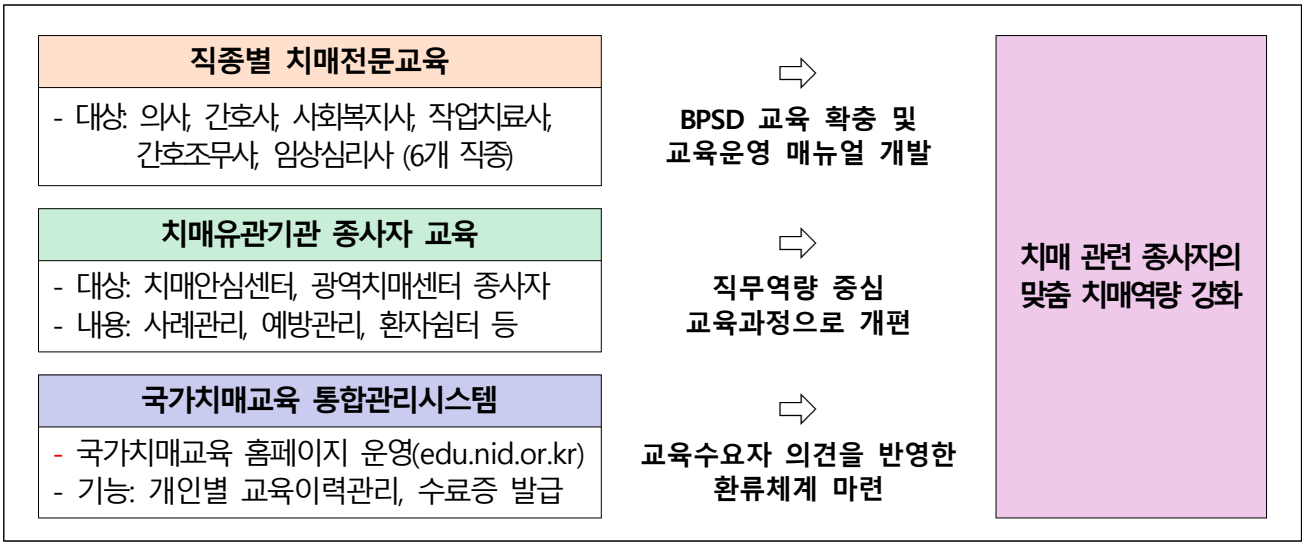

- **BPSD 교육을 확충**하여 **BPSD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치매전문교육** 내 **수탁기관**의 **교육운영 매뉴얼 개발**('26)

* (추진계획) 간호사, 작업치료사 교육과정 내 BPSD교육 확충, `30년 2,500명 이수 목표

- **치매안심센터 등 종사자 전문교육**의 경우 질적 개선을 위해 **구강 교육과정** 추가, **직무역량 중심** 교육으로 개편하는 등 교육과정 정비('26~)

* 치매안심센터의 교육 수요가 높은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가족교실, 상담기술**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세분화**하고, 직무에 따른 **맞춤교육** 제공 등 점검

- 각 교육과정에서 **치매** 관련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등)**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과정 구성 · 운영 · 환류**(feedback) 체계를 **마련**

*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절차, 교육과정 환류 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하는 매뉴얼 제작

- **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광역치매센터의** 치매교육이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광역치매센터에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의 교육 이력 등 **제공**(~'28)

□ **(돌봄 종사자)** 주된 돌봄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교육 확충, 학대예방교육 등을 통한 **치매 역량 강화**

❹ 돌봄역량이 높은 선임요양보호사 확대, **치매교육 확충**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인권 기반 치매환자** 돌봄 **확립**

- 수요자 간담회 결과, **보호자의** 돌봄스트레스는 **치매환자와의 라포(친밀감)**를 바탕으로 한 식사관리, 목욕지원 등 요양보호사의 **돌봄 서비스 질**(質)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

- 치매환자에게 **숙련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임요양보호사*** **확대** 및 **교육 확충**** 등을 통한 **돌봄 지원 강화**('26~)

* 50인 이상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승급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에 선임 역할 부여

** 치매교육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승급교육과정 개편·시행 추진('26.下)

< 2024년 요양보호사 교육체계 개편 내용 >

○ **('24년 이후 자격취득자)**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 이수시간 확대* 및 치매교육 강화로 자격증 취득만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가능

* 양성과정 교육시간이 320시간(이전 240시간)으로 확대 및 치매교육과정 강화로 별도의 치매전문교육 이수 불필요

○ **('24년 이전 자격취득자)** 장기요양기관의 신청에 따라 치매교육 희망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교육 신청접수·관리,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교육실시·시험 등 교육체계 이원화

❺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의사표시 제한**으로 인해 **학대 노출이 쉬운 치매환자**를 위한 돌봄 종사자 대상의 맞춤 **학대예방 교육자료 개발**('26) **및 보급**

❻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 학대예방교육, 광역치매센터 교육 등 **치매 유관기관 교육** 시 학대예방 등 **인권교육 내용**을 포함한 **치매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

□ **(돌봄여건 개선) 가족의 근로유연성 지원** 및 **장기요양가족휴가제** 강화를 통해 **치매환자 돌봄 여건 개선**

❼ **주야간보호 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26~)를 통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활성화**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개요 >

► **수행기관** : **30인 이상 주야간보호기관** 중 **요양보호사 가산 기관**
► **서비스 내용 : 주야간보호기관**에서 **24시간 돌봄 제공**(단기보호기관 침실기준 충족 필요, 야간 요양보호사 1인 배치 필요, 급여일수는 단기보호-가족휴가제 기준 준용)
► **이용인원 : 주야간보호 정원별 1일 4~8명**(30~39인 4명, 40~49인 6명, 50인이상 8명)

❽ 복합질환 등 **돌봄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치매상담콜센터**의 **상담 품질 개선**

< 치매상담콜센터 개요 >

► **개요**: 공공 돌봄 진입 창구로서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초기 상담·연계 기능을 수행하며, 가족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 제공과 사례관리 지원
 * 운영시간: 365일(연중무휴) 07:00~22:00 이용현황 : 연 평균 10만여 건
► **사업내용** : 치매환자·보호자·유관기관 대상 정보제공, 대상 특성 고려 사례관리 실시, 치매안심센터 자조모임 참여 대상자 지원, 비대면 인지프로그램 운영

- 환자 특성(복합질환, 돌봄환경 등)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27)*, **치매안심센터 협력**을 위한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28)**, **매뉴얼 정비*** 등을 통해 **상담 정보 관리 개선**

 * (프로그램 체계) 상담 품질의 일관성과 자료 신뢰도 확보를 위한 **상담 분류 기준 재정립** 및 상담·데이터 **등록관리 체계 정비**

 ** (안심센터 연계) 치매환자의 맞춤형 사례관리 및 보호자의 정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자조모임 지원 확대**와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관리** 추진

 *** (매뉴얼 정비) 사례관리 매뉴얼(`26), 상담응대 매뉴얼(`27) 등 **상담 절차 표준화**를 통한 돌봄 지원체계 강화

❾ 치매가족의 경제활동 부담 완화를 위한 **일·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노동부

- 치매가족의 돌봄시간 확보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 가족돌봄 휴가(·휴직)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모니터링

 * (사업장 제도 이용률)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2.4%), 휴가(4.7%), 휴직(2.4%)
 ※ 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24)

3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

1. 치매여도 안전한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 운전면허 관리체계 개선, 일시보호, 인지친화 디자인 등 **치매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 지원

◇ 인지건강 실천지수 2.0 개편 등 **긍정적 인지건강 문화 조성**

□ **(친화 환경)** 치매환자가 **걱정 없이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운전평가체계 개선**, 일시보호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❶ **치매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운전면허를 관리**하기 위한 **운전능력진단 방안** 마련[경찰청]

- **고령운전자**(75세 이상)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매3년) 시 **치매선별검사**(CIST) 등을 통해 **치매환자 대상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실시 중, 이후 절차에 **실질적 운전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도구 미비****

*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운전면허 유지 여부 검사

** 치매선별검사(CIST)는 기억력과 사고력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운전능력과 관계있는 순발력, 상황판단능력 등을 측정하기 어려움

⇨ **고위험군** 대상 개발된 **운전능력진단시스템**(실차/VR)을 **시범적용***('26)하고 향후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에 활용**('27)하여 현행 **적성검사 절차제도 보완**

*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서 시범운영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 개정 완료('25. 12)

※ 치매 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를 위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의 세부적인 활용 방안은 추후 결정 예정

【 현행 75세 이상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치매 관리 제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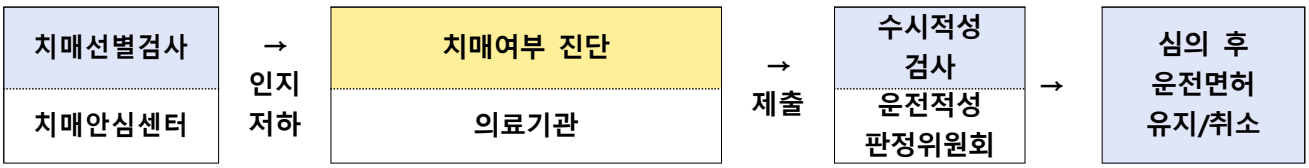

1) 정상으로 판정될 경우 운전안전교육 등 정기적성검사 이행

2) 운전 가능여부에 대한 소견서 등과 함께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판단·결정

❷ 실종·배회 중에 발견된 **신원 미확인 치매 의심** 노인을 **보호·관리**하는 보호시설 지정 등 **보호 기반 마련 추진**

* (문제점) 실종·배회 치매노인이 발견되어도 신원 확인 전까지 「경찰청 직무집행법」 제4조의 '구호대상자'로 취급되며, 관련 법규상 경찰관서, 필요시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으나 관련 시설 및 여건 부족, 낮은 치매 전문성으로 치매노인 보호에 어려움 발생

** (현황) 실종신고 접수 후 1일 이내 해제되는 치매환자는 전체 접수의 95.3%, 2일 이내는 99.2%로(`24년 실종아동등 연차보고서) 3.9%의 치매환자가 일시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령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그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일시보호 **기간 경과 후 치매의심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치매 일시 보호시설 시범운영** 방안 **검토**

❸ 부착식 스티커 외 목걸이, 팔찌 등 **인식표 개발·다양화**('26)하고, 홍보 등을 통해 경찰청의 지문 사전 등록서비스 **연계 활성화**

□ **(물리적 환경개선) 치매환자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리적 거주환경**에서의 **개선 추진**

❹ **가정, 요양시설** 등 다양한 환경을 대상으로 한 치매환자 특화 **안전 환경 체크리스트**뿐만 아니라 **인지친화적 가이드라인**도 **개발**('29)

* 개발된 가이드라인은 주야간보호기관, 요양시설 등에 적용

❺ **공간감각능력이 부족한 치매환자**를 고려, 장기요양수급자 대상 **낙상 예방** 등을 위해 낙상 예방 품목 지원 등 **낙상예방 안전 환경조성 시범사업 실시**('26~)

□ **(치매안심마을) 치매안심마을 내실화** 및 **우수사례 확산**

❻ **치매안심마을 전국 확대**('19) 이후 조성된 우수 치매안심마을 사례와 유형화 작업을 바탕으로 **우수사례 전국 확산** 및 **내실화** 추진('26~)

- **우수사례를 운영하길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및 우수사례의 확산을 위해 지역 간 간담회 등 **교류 기회** 마련

【참고】 치매안심마을 유형별 우수 사례

① **지역사회 안전망형**(치매환자 실종모의훈련 등): 지역 내 기관(경찰서, 소방서, 치매안심가맹점 등)과 연계·협력하여 실종예방을 위한 **모의훈련, 지역주민** 대상 **실종대응 교육 진행**

② **환경개선형**: 지역 내 공공기관(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과 **연계**하여 **치매환자 가정에 안전물품**(가스타이머콕, 전기차단기, 안전손잡이 등) **설치 지원**

③ **사회참여형(초록기억카페 등): 지역 내 카페와 협력**하여 조기발병 치매환자에게 주 1~2회 카페 업무(주문, 서빙 등)를 제공하고, 활동 보상으로 지역마트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여 치매환자의 사회활동 촉진**

□ **(정보 확산) 변화된 치매위험인자**에 맞는 **인지건강 실천지수** 개편, 치매용어 정비 등 치매 **긍정적 인식** 확산 노력

❼ **14개 치매위험인자**에 맞게 **인지건강 실천지수를 개편**('26~)하고 치매체크앱 탑재 등을 통해 **배포**('28)하여 **인지건강 문화 조성**

* 「치매예방수칙 3-3-3」 개발(`16)된 후 개정되지 않고 계량지표가 부족하고, 최근 란셋위원회(`24)의 치매위험인자 추가 등 최근 연구 결과가 미반영

** (現) 치매예방수칙3·3·3: 3권(걷고/골고루먹기/독서)·3금(음주·흡연/뇌손상)·3행(정기검진/사회적교류/조기검진) → (改) 계량화된 위험수준·예방방안 제시, 최근 연구결과 반영

❽ 어르신의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기관의 방문율 제고**를 위해 **국민수용도** 기반* 치매 **용어 정비** 추진

* 치매용어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쉼터 등 기관·사업명에 대해서 국민수용도·방문율 제고를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26) 및 결과에 따른 변경 추진

❾ **치매파트너 활동 강화** 및 **지역사회 확산 체계 구축**

- 기업, 도서관, 병원 등 **생활밀착형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역할 등 **가이드라인 개발**('28) **및 전국적 확산**

* 교육청 등 공공기관 및 편의점 등 민간기관과의 MOU 방안도 적극 모색하여 지역사회 긍정적 인식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파트너 취득 시 상징물 제작·배포 등

- 대상자별(연령, 성별 등 고려) **치매파트너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온오프라인 콘텐츠 개발**·보급('26~)

- 치매파트너 관리시스템과 **1365 자원봉사포털 연계** 추진으로 **봉사활동 실적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시스템 고도화 구축**('27)

⑩ 치매극복걷기행사(4월), 치매극복의 날(9월) 등 **치매인식개선 행사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치매진단·예방**을 위한 **홍보**

- **일반인 대상**으로 **격년** 단위 **치매 인식도**(지식, 태도) **조사** 실시 및 분석 **결과 기반** 치매인식개선 **맞춤형 홍보 전략 수립·추진**

제18회 치매극복의날 기념행사('25)

인생네컷 촬영모습(이벤트)

오프닝영상

유공자 포상

홍보대사 위촉

공연

치매환자가족 합창단 공연

2. 자기결정권 및 자산관리 등 치매환자 권리 보장

◇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도입, 민간신탁 활성화 등 치매환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 및 강화**

◇ 치매환자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치매공공후견 활성화, 완화의료 기반 형성**

□ **(권익 보장)**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치매공공후견제도 등 치매환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틀 마련**

❶ **의사능력 저하**로 인한 사기 등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도입**

- 시범사업을 토대로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절차 등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도입 근거**를 규정한 **치매관리법 개정 추진**

* (추진계획) 시범사업 평가(`26) → 법령(법, 시행규칙 등) 개정(`27) → 본사업 도입(`28)

【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요 】

► 사업 내용 : **본인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근거한 의료비, 필요물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

* 치매진단 이후에는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이 공공기관과 신탁계약 체결

** 지원인(물품·서비스 구매 등 지출 지원), 대리인(법적 의사표시 대리) 선임하고 모니터링

► 대상자 :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 (공공후견 지원을 받거나 기초연금수급자 등 지원 필요성 높은 대상 우선 지원)

► 지원범위 : 시범사업에서는 현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주택연금 등으로 **한정**하고, **단계적 확대**

- 신탁수수료는 무료가 원칙이나 고액자산가의 경우 실비 수준의 수수료 부과 검토하고, 민간신탁시장(통상 10억) 고려, 신탁재산 상한액을 10억으로 제한

► 사업 절차 : 연금공단·노인유관기관 홍보·대상자 발굴 → 연금공단 상담·접수 → 연금공단 재정지원계획 수립·검토 → 치매안심센터·통합돌봄 전담부서 서비스 연계 → 연금공단 점검·감독

홍보·대상자 발굴	→	상담·접수	→	재정지원계획 수립·검토	→	신탁재산 관리·지출	→	서비스 연계	→	점검·감독
국민연금공단 노인유관기관		연금공단		연금공단		연금공단		치매안심센터 통합돌봄팀		연금공단

❷ **치매 고령층**의 **민간신탁 활용**을 고려해, **민간신탁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등 개정을 통한 **신탁재산범위 확대*** 등 **추진**[금융위]

* (現)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관련 권리, 무체재산권만 수탁 가능
→ (改) 담보권, 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 등도 추가

❸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대리**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도움**을 주는 **공공후견인 지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원 인원 확대**

* (공공후견 지원인원) (`25) 256명 → (`27) 500명 → (`30) 1,900명

- 후견인 교육 등 **광역치매센터 역할을 강화**하여 **후견관리를 체계화**하고 의사결정지원 중심*의 교육자료 제공 등 **후견사무 질 제고**

* (필요성)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이 치매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인권 등 교육 필요성 증가

-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와 연계 및 **공공후견제도 이용 확대 방안 마련** 등 **공공후견제도 활성화 추진**

치매공공후견사업 교육영상

대국민 홍보영상

□ **(생애 말기) 치매환자**의 **생애말기 케어 통합성과 연속성**을 위한 **완화의료 기반 형성**

❹ **욕구 기반의 돌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전돌봄가이드라인*** **마련**(‘27~) 등

4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 지원 확대

1. AI 등 치매 연구 및 디지털 기술 활용 지원

◇ AI, 빅데이터 등 **국제 연구 환경변화**에 따른 **혁신기술 기반 치매 연구 지원**

◇ 치매 진단 신기술 검증,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확대 등 **첨단기술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 **(예방·진단기술) 국제 연구 환경변화** 및 **동향**에 **대응**한 **혁신 기술 개발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❶ 국산 치매치료제, 조기진단 의료기기, 치매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임상 활용 촉진** 등 **실용화·고도화 도모**

❷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기반 **조기진단** 및 **맞춤형 치료·예방 등** 혁신 기술 지원('26~)

❸ 뇌인지 기능에 특화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여 개인 맞춤형 뇌인지 기능 저하 예방 및 둔화 서비스 개발 등 **혁신연구 지원**

【참고】 혁신기술 주요 용어

○ **빅데이터(Big Data)**: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로 수집, 저장, 관리가 어려울 정도의 규모, 다양성, 속도가 방대한 데이터

○ **AI(Artificial Agent)**: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을 **컴퓨터로 구현**하려는 과학 및 공학 분야

○ **생성형(Generative) AI**: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분류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새롭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AI의 유형

○ **LLM(Large Language Model)**: 빅데이터를 학습하여 거대한 매개변수를 통해 **복잡한 언어체계**(문법, 문화, 지식 등)를 이해하고 가장 적합한 결과값을 도출해 내는 생성형 AI의 한 유형

【참고】 혁신기술 주요 용어

○ **멀티모달(Multimodal)**: **이미지, 음성, 텍스트 등**을 한꺼번에 **처음부터 동시에** 이해하고 **처리**하는 LLM의 한 유형

❹ 국내 치매 AI진단기술 등 **신기술 개발 활성화***에 따라 실용을 위한 **건강보험 임시등재 시범사업**** 등을 통한 **치매 진단 신기술 검증** 및 **확산 노력**

* MRI/CT 또는 음성기술 등 AI 분석 기반 치매진단기술, 치매환자/경도인지장애진단자(MCI) 대상 디지털 치료기기 등

**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를 거쳐 안전성, 잠재성 등이 인정된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임시 사용 후 신의료기술 재평가를 거쳐 정식등재 시 최종 급여여부 및 수가 결정

□ **(글로벌 공동연구) 글로벌 선도그룹**과의 **네트워킹 강화** 및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선도 기술 확보**

❺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치매관련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추진**

* 치매 진단과 치료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치매환자 임상 데이터 공유 등

□ **(ICT기술 상용화) 치매증상 지연 및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실용화 점검 및 확산방안 마련**

❻ **돌봄 현장**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비급여*** **및 급여 품목 확대**

* 신규 개발된 돌봄 용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를 제공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예비급여 시범사업(`26) 및 본사업(`27~)을 통한 신기술 품목 확대 적용

- 실종예방기기(배회감지기 등), 인지ICT프로그램 등 **치매맞춤 품목 확대 검토**

2. 데이터 기반 치매정책 평가

◇ 지역사회 및 병원 기반 **치매코호트, 치매뇌은행 등 관리체계 구축**

◇ **근거 기반 정책 운영**을 위한 **질 관리체계, 치매 통계자원** 관리

□ **(데이터)** 각종 치매 **연구데이터 연계·활용 촉진 및 환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 확충**

❶ **국가 단위 치매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통합적 관리 추진**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정보를 **개인별로 수신**하여 치매환자의 **치료정보 추적관리 정보데이터 확대** 및 치매안심센터와 병·의원 간 **환자 관리시스템 연계방안 검토**('26)

【참고】 치매 빅데이터 플랫폼(안)

❷ **각종 치매 연구데이터 연계·활용 촉진**을 위한 치매코호트 **통합 대시보드 구축** 및 **치매 뇌은행**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질병청]

- 치매코호트 등을 **연계·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 DB 확보** 및 **연구자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치매 연구 통합플랫폼** 구축('26) 및 **확대** 추진('28~)

- **치매뇌은행 자원**과 데이터를 **통합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치매 뇌은행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26~28) 및 **통합관리포털**('28~'29) 구축

❸ 지역사회·병원 기반 **치매 코호트*** 운영 및 확대, **치매뇌은행**** **체계적 구축과 활용**질병청**

* (코호트) 지역사회 기반 치매고위험군, 병원 기반 노인성 치매환자, 조발성 치매환자, 기타 고위험군 코호트 총 4개소 운영 중(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 (치매뇌은행) 사후기증된 뇌 조직을 생체자원(영상, 뇌척수액), 임상정보 등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4개소 운영 중(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 **치매 코호트**의 경우 연구 활용 활성화를 위해 **멀티모달**(임상정보, 뇌영상 등) 기반 **연구자원 고도화** 및 **추가정보 생산**('26~)

- **안정적 뇌구득**을 위한 **치매뇌은행을 확대**하고('27, 1개소 추가), **한국뇌연구원과 연계**하여 **분양 활성화**

□ **(근거 기반) 근거 기반** 정책 **기획·집행**을 위한 조사 등 **관리체계 구축**

❹ 증가하는 치매특화 인지중재프로그램 개발에 따라 **근거기반 치매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치매프로그램 질 관리체계 구축**('26~)

❺ 치매**실태조사** 및 **역학조사** 시행('28), **연도별 치매 통계(**대한민국 치매현황) 발간 등 최신 **치매 현황과 실태 분석**

- 「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치매환자 특성 및 치매 종류를 분석하는 **치매역학조사**(동법 제14조), 치매 현황 및 비용부담 파악을 위한 **치매실태조사**(동법 제14조의2) **수행**('28)

- 구강관리 등 치매환자 **주요 조사 항목을 점검·추가할 사항을 검토**('27)하여 **치매환자의 건강관리실태에** 관한 **근거**를 면밀하게 **생산**

5 모두가 협력하는 정책 기반 고도화

1.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치매관리체계 확산

◇ **치매안심센터 유형별 지원, 거주지 제한 없는 연결망 구축** 등 현장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중앙치매센터** 업무에 연구·정책과제 발굴 등을 **추가**, **광역치매센터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대응체계 제고**

□ **(기초 인프라)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체계 개선**

❶ 농어촌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치매안심센터 유형 구분**에 따른 **차별적 지원 등 지역중심형 체계 마련**

- 의료자원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지원·평가**로 인해 지역 **현장에 적합**한 서비스가 **부족**하여 지역별 **문제점 해소**에 **한계**

【 참고 : 치매안심센터 유형별 지원(예) 】

현행	개선	
치매검진, 치매예방서비스, 치매인식개선사업 등 제공	서비스형	(여건) 의료인프라 충분, 치매환자多 등 → (대응) 치매검진↓, 사례관리↑ 등
	예방형	(여건) 경도인지장애자 증가, 치매 부정적 인식 → (대응) 인지강화교실↑, 인식 개선
	검진형	(여건) 의료인프라 부족, 지역공동체 → (대응) 찾아가는 검사↑, 자원 연계

⇨ 기존의 **일률적**인 치매안심센터 **지원·평가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여건에 따른 운영 방식 **유연화** 및 치매관리시행계획 **평가 차별화** 등 **유형별 운영지원** 모색('26 개발, '27 시범, '28 확산)

❷ 치매환자와 가족 간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보호자 상담, 치매환자 지원이 원활**하도록 비대면 운영매뉴얼 개발 등 **거주지 제한 없는** 환자-가족 간 **광역연결망 구축**('26 지침 개정)

	현행		개선
연결망	▸ 환자-보호자 간 거주지가 다를 경우 **안심센터 이용 제약**	⇨	▸ **거주지 제한 없는 광역연결망 구축**으로 어디서든 서비스 이용 편리

❸ 치매안심센터별 유형, **행정구역 및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절차 및 기준** 마련('27) 및 배포('28)

*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또는 보건소 신설 등 치매안심센터 추가 설치 소요 발생 시 설치 기준 마련 등

❹ **재정 효율성**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공공기관**의 **집행관리체계 확립**, 사업별 **집행 가이드라인 제시·점검**('27)

□ **(체계 정비) 중앙-광역-기초**로 이어지는 **전달체계 개선**

❺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 간 **역할 중복 문제 해소**를 위한 **중앙치매센터** 기능 **분석** 및 **역할 집중***

* 중앙-광역 역할 분석, 문제점 진단(`26) → 개선방안 도출 → 지침 반영(`27)

- **중앙치매센터 업무**에 **연구·정책과제 발굴 등**을 추가
- **광역치매센터 모니터링 기능 강화**(지침 구체화 등), 중복사업 이관·관리,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중앙 역할 정비**
- 신규사업, 정책변화 등에 대한 TF(Task Force) 형태의 **권역**(유형별) **단위 협의 체계 확대**

❻ 프로그램 개발, 치매교육 등 **광역치매센터 역할 강화**

- 치매관리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 등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환류기능 강화** 및 치매안심센터 **전문교육**,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개발·적용 등 **광역치매센터**의 치매안심센터 **역량강화 지원 고도화**

* 인지증진프로그램, 사례관리 등 치매안심센터에서 수요가 높거나 꺼리는 사업에 대한 교육 파악 및 강화 등을 통한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도입에 따른 **후견기능** 등 **광역치매센터 기능 제고 검토**

* 광역센터당 후견인 후보자양성, 심판청구 지원, 교육 등 수행하는 공공후견팀 별도 신설 추진

□ **(의료 자원) 의료취약지 등**을 고려한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배분**

❼ **지역 간 치매관리 격차를 파악·평가**하고 인력, 의료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고려한 **맞춤 지원**

- 의료취약지 소재 **치매안심병원에 대한 지정요건 재검토,** 치매전문병동 설치·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 대상 **혁신기술을 활용한 기능보강** 등 **의료취약지 지원방안 모색**('27~)

❽ **공립요양병원의 공공보건기관**으로서 **책임·기능 강화** 및 **운영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경영 진단** 등 실시('27~)

< 치매관리전달체계 5년 후 변화 >

	현행		개선
<중앙> **중앙치매센터** (1개소, `25)	▪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프로그램, 지침 안내 등) ▪ 치매공통교육과정 개발·운영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 심판청구 등 치매공공후견 지원	⇒	▪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 치매공통교육과정 개발·운영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 심판청구 등 치매공공후견 지원 **(+) 연구 수행, 프로그램 질 관리, 정책과제 발굴**
<시·도> **광역치매센터** (17개소, `25)	▪ 광역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지원 ▪ 치매관련 종사인력 교육·훈련 ▪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	▪ 광역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지원 ▪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실무 교육 및 컨설팅** ▪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심판청구 지원 등 후견사업 강화**
<기초>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25)	▪ 조기진단 및 예방서비스 ▪ 환자쉼터, 조호물품 등 치매환자 지원 ▪ 치매안심마을 등 치매인식개선	⇒	▪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서비스 강화** ▪ 서비스형, 검진형 등 유형에 따라 **차별적 서비스** 제공
<의료자원> **치매안심병원** (25개소, `25)	▪ 치매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전문 병원	⇒	▪ 치료인프라 지속 확충 **(+) 의료취약지 추가 지원**
치매관리주치의 (42개 시·군·구, `25)	▪ 치매환자 대상 체계적·지속적 치료관리 제공	⇒	▪ 단계적 확대 * (`25) 42개 → (`28) 전국 확대 ▪ **재택의료센터와의 연계**

2. 촘촘한 치매자원 연결망 형성

◇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예정('26.3)**에 따른 **치매유관자원 연계 강화**

◇ 인지저하 의심자 발굴, 치매환자 지원 강화를 위한 장기요양보험 등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타 기관 간 **정보 연계체계** 고도화

□ **(자원 연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 예정)에 따라 **치매인프라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 완비**

❶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전문팀 구성 등 **조직 강화** 및 **사례관리 질적 제고**를 위한 **평가 개선**('26)으로 **품질 제고**

❷ 돌봄통합지원법('26.3)에 따른 **통합돌봄지원 확대**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연계 기능 강화**

- 시군구 통합지원회의에 안심센터 참여 활성화, 통합돌봄 대상자 중 치매의심자 등 대상 연계매뉴얼 마련 등 상호 간 **협력*** **증진**('26~)

【 통합돌봄지원체계 내 치매 서비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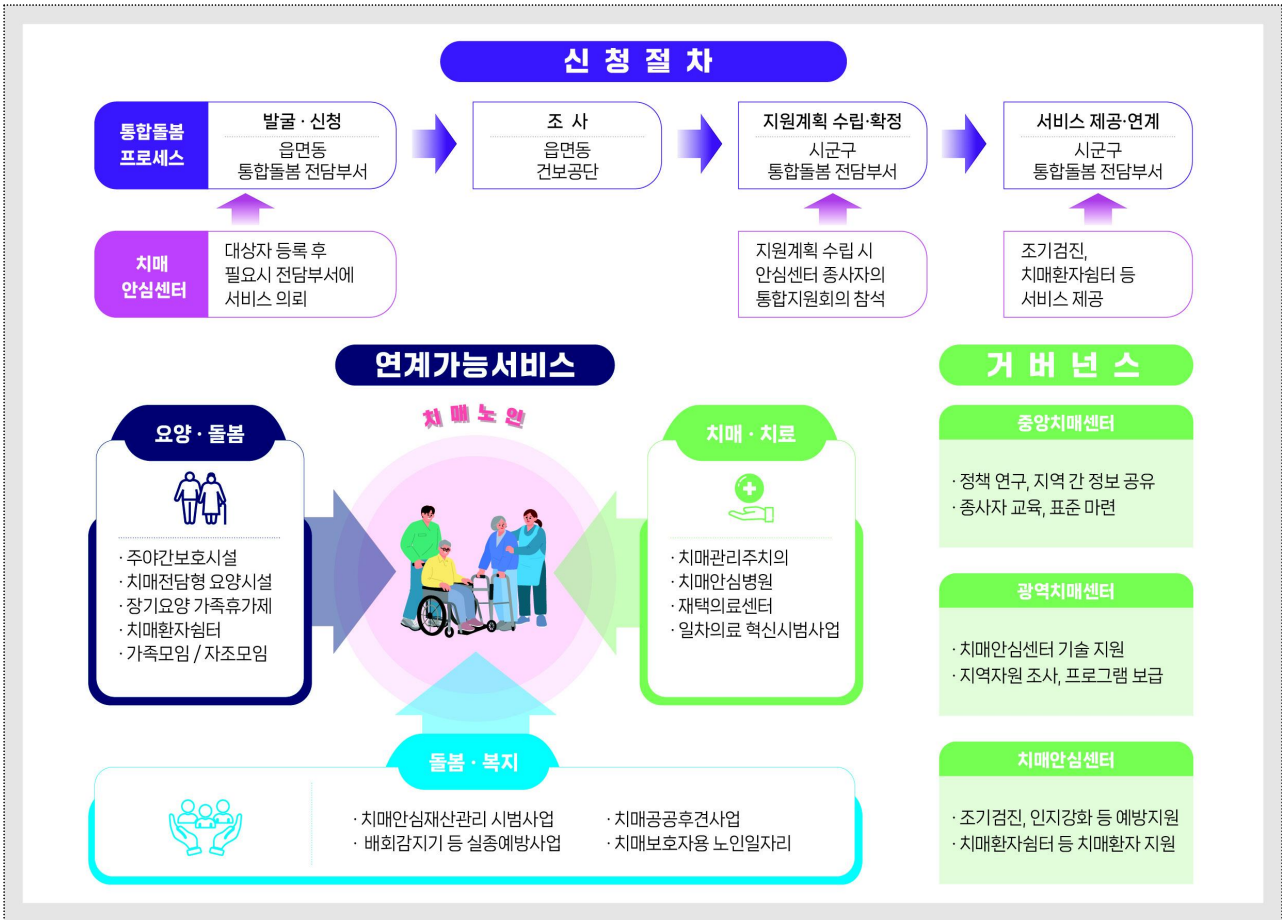

❸ **광역치매센터 주관**으로 의료기관, 복지관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요양 등 **지역사회 자원 현황**을 **주기적 조사**

- **조사된 지역사회 자원을 바탕**으로 사례관리 등 치매 관련 **서비스 연계 및 협조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 공유** 및 **워크숍 개최**

- **지자체 간 치매 관련 자원**(인력·시설·프로그램 등) 및 **우수 운영 사례 수집·분류·공유**하는 **'지역별 치매 자원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 및 운영

❹ **인지저하 의심자**에 대한 **효율적 발굴** 및 **치매환자 적극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검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돌봄, 심평원 청구정보 등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과 **타 기관 시스템 간 정보 연계 추진**

* (건강검진) 66세 이상 국가검진 대상자일 경우 인지검사를 수행하고, 인지저하 의심자로 판정되어 정보를 동의할 경우 치매안심센터로 정보 연계

** (장기요양) 장기요양수급 대리신청 및 주야간보호시설, 복지용구 등 이용 내역 확인

*** (통합돌봄) 통합돌봄 대상자 개인별 지원계획 및 서비스 제공 의뢰(통합돌봄 → ANSYS), 대상자 의뢰(발굴) 정보(ANSYS → 통합돌봄) 정보 연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청구정보시스템 내 치매상병코드 대상자 정보 연계

- 치매 조기발견 등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거점관리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참고】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 타 기관 간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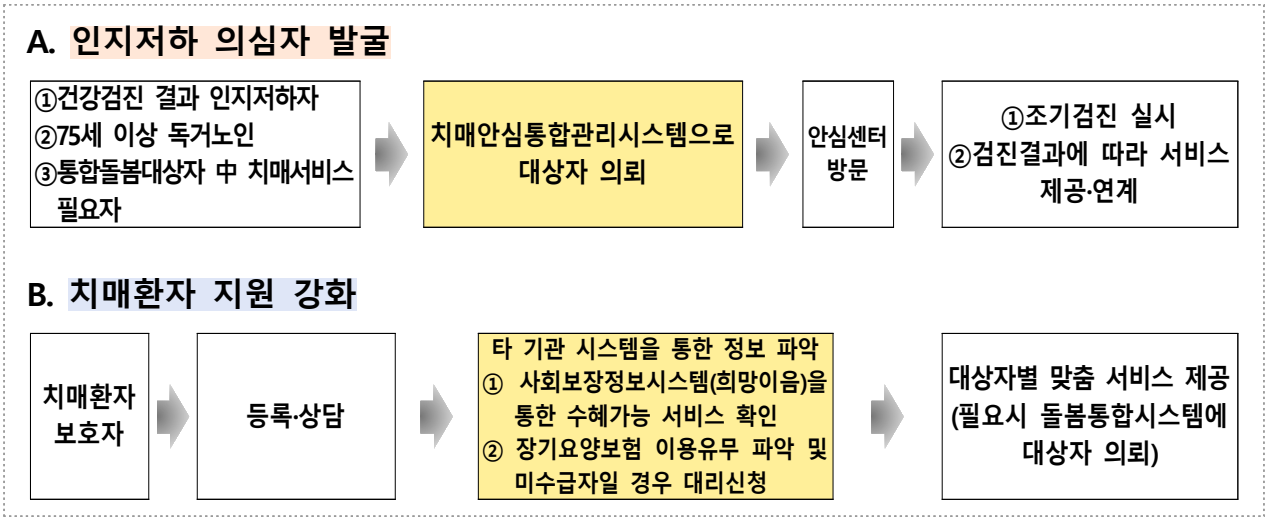

□ **(치유 프로그램) 농업, 해양 등 자연**을 활용한 **야외치유프로그램 실시**

❺ **치매 예방이 필요한 고령자** 대상으로 우울감 예방, 근감소 예방, 고립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산림치유 연계프로그램 운영**[산림청]

❻ **경증 치매환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운영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지속 제공**하고 치유농업사 양성, 인증제도 운용 등 **질적 제고**[농촌진흥청]

❼ **농촌돌봄농장,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등을 선정·육성하여 **치매안심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돌봄서비스 제공**[농식품부]

❽ 치매환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건강관리와 휴양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해양치유센터 건립** 추진[해수부]

* (센터 건립 일정) 태안('25.11월 시범운영 개관), 경남 고성('26), 울진('27), 제주(28)

【참고】 산림자원과 인지개선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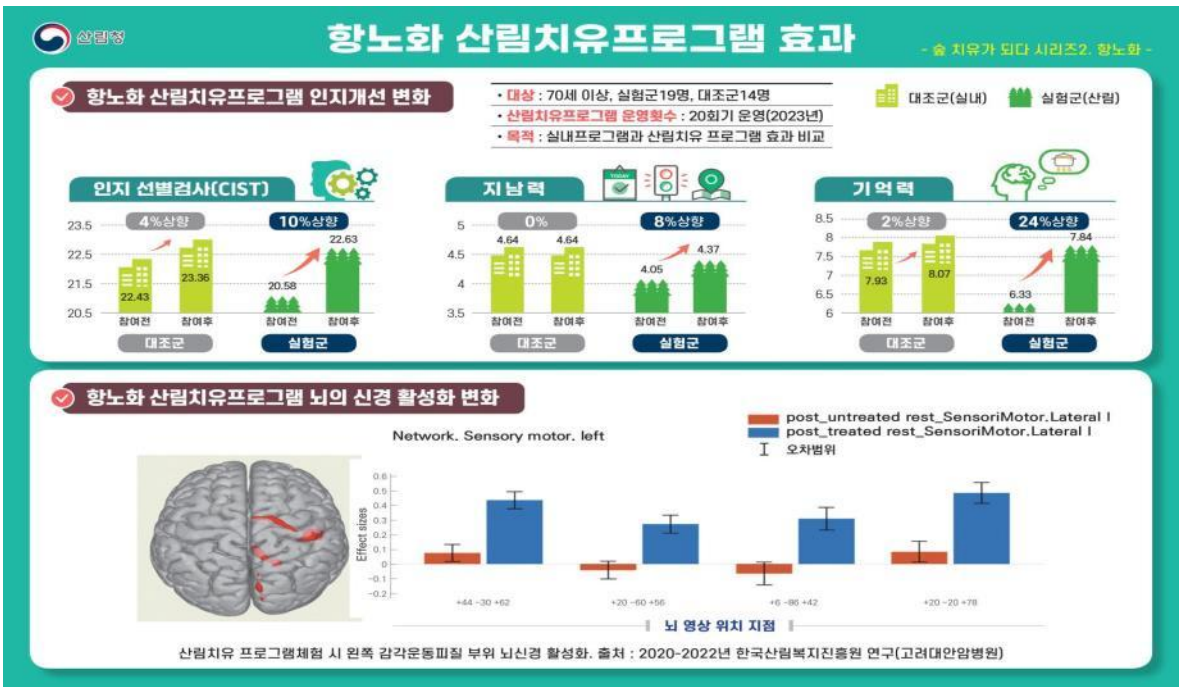

참고1 주요 과제 성과 목표

분야	주요 성과	'25년	→ '30년	비고
예방치료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치매예방 및 치료 지원**			
	경도인지장애자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수	20만명	25만명	
	치매관리주치의 대표	42개	전국 확대	치매관리주치의 운영 기초지자체
	치매진료지침	일률적 지침	원인별·중증도별	
돌봄경감	**치매환자 가족과 보호자가 지치지 않도록 맞춤 지원 강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지원 확대	치매환자쉼터 중복 제한	중복허용(`26) 이용한도 확대(`27)	
	치매환자 보호자 노인일자리	-	제공(`27)	
	BPSD 전문교육 수료	-	2,500명	
	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 대상자 수	20만명	22만명	
친화환경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환자 권리 보장**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대표	-	본사업 도입(`28)	
	치매공공후견 지원인원	256명	1,900명	
	치매 인식도	74점	81점	
연구지원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 지원**			
	표준화된 논문 영향력 지수(mmIF)	-	79.2	NTIS 연구성과 관리시스템
	치매프로그램 심사건수	-	50개	
정책기반	**모두가 협력하는 정책 기반 강화**			
	치매안심센터 기능 정비	-	유형별 지원	
	지역사회 치매관리율 대표	77%	83.3%	`26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지역별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률 격차	65%	35%	HP2030 성과지표

참고2 추진과제별 연도별 추진 일정(안)

추진과제	연도별 추진 일정					협조 부서/부처
	'26	'27	'28	'29	'30	
1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치매 예방과 치료						
1. 경도인지장애 조기진단 강화 및 치매위험인자 관리						
❶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검진체계 개편	연구	시범	확산			
❷ 인지건강검사 연령 확대로 조기발견율 제고	사전 연구	연구				
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강화	제공					노인정책과
❹ 고립가구 조기 발굴을 위한 조기발굴 협력체계 구축	시행					지역복지과
❺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상 치매 진단 지원	개정					
❻ 통합돌봄 대상자 치매안심센터 연계	개정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❼ 치매안심센터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서비스 강화	조사	연구	배포			
❽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대상 맞춤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❾ 건강100세운동교실 확대·연계	시범	제공				건강보험공단
❿ 경로당·복지관의 치매예방프로그램 모니터링	제공					노인지원과
2. 전문치료체계 구축과 치매복합질환 대응						
❶ 치매관리주치의 단계적 확대 및 질 제고	확대		전국			
❷ 재택의료센터 질적 제고 및 연계 강화	교육					요양보험제도과
❸ 치매안심병원 지속 확충	확대					
❹ 독거 치매가구 대상 IoT 기반 모니터링	제공					노인정책과
❺ 주요 치매 원인별·중증도별 표준 치료 가이드라인 개발		개발				
❻ 치매전문 구강관리서비스 기반 마련	기반 마련	제공				구강정책과

추진과제	연도별 추진 일정					협조 부서/부처
	'26	'27	'28	'29	'30	
❼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치매전문 협력 등 의뢰체계 확립방안 모색	조사		연구			
2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 돌봄과 가족 지원 강화						
1. 치매 걱정 없는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다양화						
❶ 치매 장기요양등급자 돌봄 지원 강화	검토	개정				요양보험제도과
❷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확충	확충					요양보험운영과
❸ 초기 치매환자 집중관리서비스 강화	개정	배포				
❹ 치매안심센터 유형별 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조사		연구	확대		
❺ 조기발병 치매환자 및 보호자 상담 등 서비스 개발	예산 확보	개정	연구			
❻ 조기발병 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 사회활동 모델 적용		연구	시범			
2. 보호자의 돌봄 소진 예방 및 종사자 BPSD 등 치매역량 강화						
❶ 치매안심센터 가족교실 및 자조모임 확대	조사	개발	배포			
❷ 치매환자 가족의 노인일자리 제공	검토	제공				노인지원과
❸ BPSD 확충 등 치매교육체계 정비 및 시스템 개편	정비	적용	시스템 개선			
❹ 선임요양보호사 확대 및 치매교육 확충	지속					요양보험운영과
❺ 치매환자 학대 예방 교육자료 개발·보급	제작					노인정책과
❻ 치매유관기관 대상 인권교육 강화	제공					
❼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	시행					요양보험제도과
❽ 치매상담콜센터의 품질 개선	사례관리 정비	시스템 개선	매뉴얼 보완	연계 보수		
❾ 근로시간 단축, 휴가(휴직) 제도 시행 사업장 확대	홍보					고용노동부

추진과제	연도별 추진 일정					협조 부서/부처
	'26	'27	'28	'29	'30	
3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						
1. 치매여도 안전한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❶ 고위험 운전자 운전능력진단 방안 마련	설계	개정	시행			경찰청
❷ 실종배회 치매의심노인 일시보호 방안 마련	(안) 마련	시범 검토				
❸ 인식표 개발·다양화 및 지문 사전등록서비스 연계 활성화	시범	보급				
❹ 치매환자 안전환경 가이드라인 개발	사전 조사	연구	시범	확산		
❺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실시	공모					요양보험제도과
❻ 치매안심마을 유형화 및 전국 확산	제작	배포	지원			
❼ 인지건강 실천지수 개편 및 확산	조사	개편	확산			
❽ 치매 용어 정비 추진	검토					
❾ 치매파트너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지역사회 확산 체계 구축	대상별 컨텐츠	시스템 연계	가맹점 가이드라인			
❿ 치매인식개선 행사 개최 등 치매 적극 홍보	지속					
2. 자기결정권 및 자산관리 등 치매환자 권리 보장						
❶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도입	시범		도입			국민연금공단
❷ 민간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개정	시행				금융위원회
❸ 치매공공후견제도 활성화	지원					
❹ 욕구 기반 돌봄 기반 마련	조사	연구	보급			
4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 지원						
1. AI 등 치매 연구 및 디지털 기술 활용 지원						
❶ 치매치료제 및 조기진단 의료기기, 치매 예방프로그램 연구 지원	지원					보건의료기술 개발과

추진과제	연도별 추진 일정					협조 부서/부처
	'26	'27	'28	'29	'30	
❷ AI·빅데이터 기반의 정밀 의료 활용 지원	지원					보건의료기술 개발과
❸ 뇌인지 기능 저하 예방 서비스를 위한 혁신연구 지원	지원					보건의료기술 개발과 과학기술정통부
❹ 치매 진단 신기술 검증 및 확산	시행					건강보험지불 혁신추진단
❺ 세계 치매 공동연구 추진	추진					보건의료기술 개발과
❻ 장기요양 복지용구 예비급여 추진	시범	실시				요양보험제도과
2. 데이터 기반 치매정책 평가						
❶ 국가 단위 치매 빅데이터 구축	검토					
❷ 치매연구데이터 통합대시보드 운영	구축			운영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❸ 치매 코호트 및 치매뇌은행 체계적 구축	구축	운영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❹ 치매프로그램 질 관리체계 마련	시행					
❺ 치매역학·실태조사 시행 및 치매 통계 발간	통계 발간	통계 발간	법정 조사	통계 발간	통계 발간	
5 "모두가 협력하는" 정책 기반 강화						
1.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치매관리체계 고도화						
❶ 치매안심센터 유형별 지원체계 마련	연구	(안) 마련	확산			
❷ 거주지 제한 없는 환자-가족 간 연결망 구축		개정				
❸ 치매안심센터 설치 절차 및 기준 개편		마련	배포			
❹ 치매공공기관 집행 가이드라인 점검		마련	배포			
❺ 중앙치매센터 기능 정비	연구	개정				
❻ 광역치매센터 역할 강화	연구	개정				

추진과제	연도별 추진 일정					협조 부서/부처
	'26	'27	'28	'29	'30	
❼ 의료취약지 맞춤 지원	조사	연구	지원	지원		
❽ 공립요양병원 경영 진단 등 실시	조사	연구	지원			
2. 촘촘한 치매자원 연결망 형성						
❶ 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 품질 제고	개정	지원				
❷ 통합돌봄지원 강화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연계 체계화	조사	개정				
❸ 지역사회 자원 현황 주기적 조사	조사					
❹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 - 타 기관 간 정보 연계 추진	연계					
❺ 산림치유 연계프로그램 운영	운영					산림청
❻ 치유농업 프로그램 제공	운영					농촌진흥청
❼ 사회적 농장 선정·육성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❽ 해유치유 프로그램 운영	운영					해양수산부